

釜山外國語大學校 比較法研究所
比較法學 第15輯(2004)

인도중재법개관

정 용 상*

<목 차>

- I. 서설
- II. 인도중재법의 입법배경과 취지
- III. 인도중재법의 특징
- IV. 인도중재법의 입법체계
- V. 중재계약(중재합의)
- VI. 중재판정부의 구성
- VII. 중재절차
- VIII. 중재판정
- IX. 결론

I. 서설

사인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해결방안으로는 소송에 의하는 방법과 비소송적 방법에 의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국가는 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공권력(national authority)에 터 잡아 매우 엄격하고도 구체적인 소송제도를 마련해 놓

* 부산외국어대학교 법학부 교수.

2 比較法學 (第 15 輯)

고 있다. 따라서 사인 간에 법률적 분쟁이 생긴 경우에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용이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소송제도는 모든 종류의 분쟁을 하나의 틀 안에 넣고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개개의 분쟁해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분쟁해결에 적합한 다른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협상 (negotiation) 및 화해(compromise), 알선 (intermediation), 조정(conciliation), 중재(arbitration) 등을 들 수 있다.

중재란 “사인간의 분쟁해결을 역시 사인인 제3자에게 의뢰하고, 다만 당사자간에 그 제3자에 의한 판정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것”¹⁾이라 정의하고 있다.

중재제도의 장점은 탄력성(flexibility), 우의성(amicability), 전문성(expertness), 비밀성 또는 비공개성(confidentiality), 판단주체 선정에 있어서의 자치성(autonomy), 국제분쟁에 있어서의 중립성(neutrality), 국제분쟁에 있어서 승인과 집행의 용이성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중재제도의 단점은 불확실성, 진실발견의 어려움, 국내중재에 있어서 집행가능성의 감소, 다수당사자간의 분쟁을 일거에 하나의 절차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이 중재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나 서로 다른 법질서 속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장점이 단점을 앞선다. 즉 국제거래의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국가법질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려 할 때의 실질적 또는 정신적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이며 그들의 손에 의하여 직접 선정된 제3자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싶어 한다. 특히 상대방이 국가 또는 국영기업체인 경우에는 상대방 법원의 편파적 판정에 대한 우려가 극심하므로, 오히려 중재를 선호하게 된다.

이처럼 국제거래에 있어서 발생되는 분쟁은 대부분 상사거래로 인한

1) Black, LAW DICTIONARY 5th ed., 96(1979)

분쟁이므로 이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제도를 국제상사중재제도라고 하는데, 그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법이나 판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지구촌단일시장의 형성으로 인하여 국제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자연히 분쟁 또한 그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국제거래상의 분쟁해결방법으로는 국제소송, WTO제소, 국제중재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중재제도가 신속성, 경제성 등의 면에서 매우 합리적이다.

인도법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인도는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인도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인도는 IT 등 하이테크분야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어 향후 우리기업의 진출은 물론 인적교류 또한 활발할 전망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인도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인도법의 구조와 성격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진출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발전적으로는 세계통일법규범의 준수라는 큰 목표의 추구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국제적 법 발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중재에 대한 이해는 양국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인도중재 및 조정법(1996)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중재계약(중재합의), 중재인(중재판정부의 구성), 중재절차, 중재판정 등에 대하여 법규정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과 인도의 중재법은 공히 UNCITRAL모델중재법을 기초로 하여 제정(개정)되었기 때문에 양국중재법상의 유사점이 매우 많다. 그러나 발전적으로는 기업 환경이나 법감정의 차이 등을 감안한 인도와 한국의 중재법상의 해당제도와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양국 상거래발전에 기여할 수 입법적 기초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인도중재법의 입법배경과 취지

인도는 1996년에 ‘중재 및 조정법’이 제정되었다.²⁾ 인도의 ‘중재 및 조정법(1996)’에서는 다양한 중재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3개의 별도의 법을 대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즉 국내중재관련법률, 국제상사중재, 외국중재결정과 조정의 시행 등을 통합·정리하였다.

당시 이 법의 입법형식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같은 내용의 법안이 1995년에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이 경과되어 국회가 폐회되었기 때문에, 인도헌법 제123조 제1항에 의해 대통령의 권한으로 제정하게 된 것이다. 원안은 인도법제심의회(The Law Commission of India)에서 작성된 것이다.

III. 인도중재법의 특징

이 법의 입법배경은 1940년 중재법이 전혀 인도의 경제현실에 적합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도에 국제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의 확립이 시급히 요청되었으며, 또한 경제개혁의 일환으로써 입법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인도에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던 이러한 국가위험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인도는 1958년 뉴욕조약, 1927년 제네바조약과 1923년 제네바의정서에 가입하고 있다.

이 법률은 국제중재에 있어서 표준모델이라 할 수 있는 UNCITRAL

2) 인도중재 및 조정법은 199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폐지된 법은 중재(규약과 조약)법(1937년법6호), 중재법(1940년법10호), 중재(승인과 집행)법(1961년법45호) 등이 있다.

의 국제상사중재모델법과 조정규칙(1980)을 대폭 수용한 선진 입법적 특색을 가지고 있다. 즉 국내중재·조정과 국제상사중재 쌍방을 대상으로 한다.

이 법률은 계약당사자가 중재진행장소를 결정토록 하며, 중재진행의 범위를 국제중재기관과 그 기관의 규정에 일임하고 있다.

이 법은 모델법의 구성과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국내실정에 맞도록 최소한의 필요한 변경과 추가를 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입법하였다. 구법에서 영국의 중재법의 전통을 따르던 입법태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이 법은 국내중재·국제상사중재·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물론이고, 이와 함께 사적조정절차규정까지 입법화하여, 하나의 통합된 입법형식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 법은 뉴욕조약, 제네바조약, 제네바의정서상의 스케줄을 국내 법화하여 체약국의 외국중재판정집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은 민간조정제도를 두어, 화해에 의한 분쟁해결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그 화해합의서에 대해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 강제력을 인정하고 있다(제74조).

또 조정인은 중재인과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조정인은 중재나 재판절차에서 중인 또한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조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제80조).

'중재 및 조정법'의 특색을 요약하면, 첫째, 국제상거래 중재 및 조정과 국내중재 및 조정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둘째,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특정중재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셋째, 중재원이 중재심사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넷째, 중재판정부는 해당사법권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다섯째, 중재과정에서 법원의 감독역할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섯째, 중재원이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조정 혹은 다른 절차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일곱째, 모든 마지막 중재원의 결정은 같은 방법으로 시행된다는 것을 규정 짓기 위해, 여덟째, 조정의 과정을 거쳐 당사자들에

6 比較法學 (第 15 輯)

의해 분쟁이 해결될 경우 이는 중재원에서의 판정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 아홉째, 외국인 측에 대한 중재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 즉 외국인의 자국과 인도 간에 중재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특정조건에 따라 인도에서 내린 중재판정은 외국인 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IV. 인도중재법의 입법체계

인도 중재법의 입법체계를 요약하여 보면 전문과 서문으로 시작되어 총 4편 8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전문에서는 인도공화국 건국 46주년인 1966년 제8호령으로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었다는 사실과, 이 법은 국내중재 · 국제상사중재 ·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법을 통합 · 수정하였으며, 아울러 조정에 관련되는 법령일체를 정비하기 위한 입법의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서문에서는 이 법이 유엔모델법과 그 규칙을 채택하였음을 밝히고, 이 모델법이 국제상사거래에서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공정하고도 효과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각국의 통일적인 법규제정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소개하고, 아울러 인도에서도 중재 및 조정에 관한 입법 작업을 함에 있어 이 모델법이 크게 참고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국제중재 · 국제상사중재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법을 통합 · 수정하고, 심지어 조정에 관련되는 그와 관련되는 부수적 사항을 정의하기 위한 법안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미결상태에서, 국회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인하여 대통령은 헌법 제123조 제1항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이 법령을 공포하였다는 입법의 경과를 밝히고 있다.

이 법은 제1편 중재, 제2편 외국중재판정의 집행, 제3편 조정, 제4편

보충조항 등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총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일반조항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 중재신청의 구조(제2조),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의 수령(제3조), 책문권의 포기(제4조), 사법개입의 범위(제5조), 절차상의 지원(제6조)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제2장 중재계약에서는 중재계약의 정의(제7조), 중재계약에 기초한 중재신청의 효력(제8조), 법원에 의한 지원(제9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장 중재판정부의 구성에서는 중재인에 관하여 그 수와 선임방법, 기피이유와 절차중재인의 임명, 위임의 종료로 인한 중재인의 보충 등에 관한 사항(제10조 - 제15조)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 중재판정부의 관할에 관한 사항으로, 중재판정부가 자기의 관할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권리, 중재판정부에 의한 잠정적인 처분명령(제16조, 제17조)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제5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평등취급의 원칙, 중재절차의 방법의 결정, 중재지 선정, 중재절차의 개시, 사용언어의 결정방법, 공격과 방어의 진술, 변론과 서면에 의한 절차, 당사자의 불이행, 중재판정부가 선임하는 전문가, 증거수집에 대한 판정부의 지원(제18조 - 제27조)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제6장은 중재판정 또는 중재절차의 종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즉 분쟁에 적용될 실체법의 결정, 복수중재인에 의한 결정, 화해, 중재판단의 형식과 내용, 절차의 종료, 판정의 정정과 해석(제28조 - 제33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7장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신청에 관한 사항으로써, 중재판정취소신청(제34조)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다.

그 외 제8장 중재판정의 확정과 집행에 관하여(제35조, 제36조), 제9장은 항고에 관하여(제37조), 제10장은 잡칙으로써 예납금, 중재판정에 대한 담보 또는 비용에 관한 예납금, 중재계약의 당사자 사망의 경우 효력

8 比較法學 (第 15 輯)

유지, 파산의 경우, 관할문, 기간제한(제38조 - 제43조)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제2편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써 총 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뉴욕조약의 재정’에서는 이 장에서 문맥상 모순이 없는 한 뉴욕조약을 따름을 천명하고 있는데, 뉴욕조약의 정의, 당사자간의 중재신청을 구하는 사법의 권한, 외국중재판정이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 증거,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의 조건, 항고, 권리보존, 제2편 제2장의 불적용(제44조 - 제52조)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제2장 ‘제네바조약중재판정’에서는 제네바조약중재판정의 정의, 당사자를 중재에 신청하도록 하는 사법기관의 권한, 외국중재판정이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 증거,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의 조건, 외국중재판정의 집행, 항고, 권리보존(제53조 - 제60조) 등을 정하고 있다.

제3편은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적용범위, 조정인에 관한 사항(수, 선임, 조정인에 대한 신청서 제출,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는 조정인), 조정절차진행상의 지원, 조정인과 당사자와의 의사전달, 정보의 개시, 당사자간의 협력, 당사자에 의한 분쟁해결의 제안, 화해, 화해계약서의 효력과 효과, 비밀의 유지, 조정절차의 종료, 중재 또는 소송절차에의 이행, 비용 예납금, 기타 절차에 있어서 조정인의 역할, 기타 절차에 있어서의 증거능력(제61조 - 제81조)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다.

마지막 제4편은 부칙으로써, 고등법원의 규칙제정권, 시제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제82조 - 제85조).

V. 중재계약(중재합의)

‘중재계약’이란 계약상의 것 이거나 아니거나 불문하고, 특정의 법률

관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지 모를 모든 분쟁 또는 특정한 분쟁을 중재에 의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한다(제7조 제1항). 중재합의는 계약상의 중재조항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독립된 합의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제7조 제2항).

당사는 현재 또는 장래의 분쟁을 중재에 의뢰할 수 있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재계약(합의)은 서면으로 하고 인지를 첨용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 속에서 어떤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서면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중재조항으로 본다. 다만 계약이 서면에 의한 것으로서 그 중재조항에 관한 언급이 당해 중재조항을 계약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인정될 정도의 것인 경우에 한한다. 중재인의 서명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나 중재에 의뢰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분쟁에 관한 주제는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이를 테면 양당사자 간에 서명한 서면에 의한 경우, 서간·텔레스·전보 기타 통신수단의 교환을 통하여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경우, 중재계약의 존재가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어 타방당사자가 이를 부인하여 공격방어방법의 서면의 교환이 있었던 경우 등에 의한 중재계약에는 서면으로 명정해야 한다(제7조 제4항).

중재계약의 내용 중에 중재계약을 구성하는 중재조항의 인용은 당해 계약이 서면에 의해 위와 같은 인용이 있으면 당해중재조항은 계약서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제7조 제5항).

중재계약에 의한 중재의뢰가 있을 경우 그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중재계약의 대상의 된 사항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법기관은 이 분쟁에 관한 실체적 항변의 제출시기 이전에 중재합의의 항변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한 중재절차의 이행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신청에는 중재계약의 원본 또는 적법하게 인증 받은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수리해야 한다(제8조 제 1, 2항).

당사는 중재절차개시 이전 또는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중

재판정이 될 때부터 그 중재판정부에 의한 집행판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중재절차수행에 필요한 상당한 능력을 흡결한자 또는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중재계약의 대상이 된 일체의 사물의 보전·일시적인 보관 또는 매각, 중재대상의 분쟁이 되는 금액의 보전, 중재의 대상이 되는 재물의 유치·보전·검사, 유지가처분 또는 관재인의 선임 등의 사항에 관하여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제9조).

중재신청을 합의한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절차를 취할 경우에는 그 당사자(피고)는 당해법원에 대하여 소송절차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즉 중재합의사건이 법원에 제소되었을 경우 법원은 당해 중재합의가 무효이거나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을 중재에 회부해야 한다.

중재약관 또는 중재인의 권한은 일방의 당사자가 사망할 때에 취소된다. 그러나 소권이 사람의 사망으로 소멸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을 중재에 의뢰하는 것을 계약에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그 규정이 당해계약을 수탁한 자를 구속하게 된다.

VI.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재인의 수 및 선택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중재인의 수를 당사자가 결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1인의 중재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우선적으로 스스로 중재인의 수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제10조).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누구도 국적을 이유로 중재인으로 행동하는 것을 배제 당하지 아니한다. 당사는 중재인 선정절차에 관

해 자유로이 합의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복수의 중재인을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의장을 선임하여야 하고, 제3자의 지명으로 중재인을 정할 수도 있다. 중재인이 2명일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그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중재인을 지명하지 않을 때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자기가 선임한 중재인을 지명할 수 있다.

합의가 중재인의 선임을 당사자의 합의로서 지명된다는 것을 규정하였을 경우 혹은 지명된 중재인 또는 의장이 인수를 거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한다든지 혹은 사망하였을 때에 당사자가 그와 같은 이유로 발생한 공석을 보충하기 위하여 새로운 중재인을 지명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중재인 및 의장의 지명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았을 때에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통지한 다음 중재인 또는 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

즉 중재인 선정절차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가 그 절차에 의해 요구된 행동을 하지 않거나, 양당사자 또는 2인의 중재인이 그러한 절차에 의해 예기된 합의에 도달할 수 없거나, 기관을 포함한 제3자가 그 절차에 의해 위임된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는 선정절차에 관한 합의로써 다른 선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법원 기타 기관이 이를 선정한다.

중재인선정절차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3인의 중재에 있어서 각 당사자가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2인의 중재인이 제3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중재인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자신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 관하여 고지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피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그 관할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지며 여기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효력에 관한 이의도 포함된다. 이의 적용상 계약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중재조항은 계약의 다른 조항으로부터 독립된 합의인 것

으로 취급한다. 중재판정부에 의한 계약무효의 결정은 중재조항의 법률상 무효를 초래하지는 않는다(제16조 참조).

VII. 중재절차

당사자들은 등등하게 취급되며 각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사견을 개진할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제18조).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중재진행에 있어 따라야 할 절차에 관해 자유로이 합의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는 법절차에 따라 중재를 진행한다. 중재판정부에 부여된 권한에는 증거의 인정여부, 신빙성, 유용성 및 그 경증을 정하는 권리가 포함된다.

당사자는 중재장소에 관하여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만약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장소는 당사자의 편의를 포함한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중재판정부가 그 장소를 결정한다(제20조).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특정분쟁에 대한 중재절차는 당해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요청한 서면을 피신청인이 수령한 날로부터 개시한다.

중재인은 공서양속상의 기본적 원리를 준수해야 한다. 중재인은 당사자 및 중인에게 선서를 시킬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중재판정부가 결정한 기간 내에 신청인은 자신의 청구를 입증하는 사실, 쟁점 및 요청한 구제수단을 진술해야 하며,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항에 관한 방어내용을 진술해야 한다.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당사자는 자신의 청구내용이나 방어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당사자의 반대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재판정부는 증거제출 또는 구두주장을 위한 구두심문회를 열 것인지 또는

서류 기타 자료를 근거로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한다.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없는 중재인 또는 중재인으로서 체면을 손상하는 중재인을 해임시킬 수 있다. 법률위반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사건으로 중재판정부에 의뢰할 수 있다.

VIII. 중재판정

2인 이상의 중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중재인의 다수결로써 한다(제29조). 다만 절차상의 문제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중재판정부의 구성원 전원이 위임한 경우에는 의장중재인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중재절차 진행 중 당사자가 분쟁을 해결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절차를 종료하고 당사자들의 청구가 있고 중재판정부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합의한 내용을 중재판정문 형식으로 기록해야 한다.

판정문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중재인은 중재판정문에 서명을 해야 한다. 2인 이상의 중재인의 중재절차에 있어 서명불가지에 관한 이유가 설시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 구성원의 다수인이 서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판정문의 작성이 완료되면 중재인들은 서명한 후 그 사본을 각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판정의 일부가 중재에 부의되지 않은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 될 때, 또는 판정이 형식상 불완전할 때 또는 판정에 결함이 있을 때에는 판정을 수정할 수 있다.

판정이 파기 될 때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재인 또는 의장이 그 지

위 상 있을 수 없는 행위가 있을 때, 둘째, 중재를 관할하는 중재판정부의 명령이 있은 후 판정을 하였을 때, 셋째, 판정이 불공정하였을 때 등이다.

중재판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로는, 중재합의 당사자가 무능력자이거나, 신청인이 중재인의 임명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 중재의 범위 밖의 분쟁을 처리한 경우, 분쟁의 주제사항이 법에 의해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판정이 공서양속에 저촉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중재판정은 구속력이 있으며 관할법원에 서면신청을 하여 집행한다. 판정문을 원용하거나 그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정당하게 인증된 판정문 또는 중재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IX. 결론

이상에서 인도중재법에서의 중재계약과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재절차, 중재판정에 관한 법규정을 검토하였다.

이 외에도 외국중재판정의 집행, 조정 등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나 본고에서는 생략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인도와 한국은 공히 UNCITRAL모범중재법(1985)을 채택하여 국내법화 하였으므로 그 법 구조와 특징이 거의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국제법규범의 통일화현상에 부응하는 매우 바람직한 입법태도로서 환영한다. 앞으로 한·인도간의 국제거래가 활성화되면 국제소송이나 WTO에 제소하는 방법보다는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경제성과 신속성을 도모하여 국제상거래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법 전반에 대한 연구의 시급성이 요청되는 때이다.

참고문헌

- 장병근, 국제중재의 기본문제, 2000.
-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2001.
- 손경한, 중재합의에 관한 일반적 고찰, 중재논총 (1991) 261면.
- 이태희, 국제계약법, 1989.
- 장문철, 현대중재법의 이해, 2000.
- 小島武司・高桑昭, 註釋 仲裁法, 1988.
- David, Arbitration in International Trade, 1985.
- Derians, France, ICCA Handbook, 1, 1989.
- Gaja,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90.
- ICCA, International Handbook on Commercial Arbitration I, II, 1989.
- Schwab/Walter, Schiedsgerichtsbarkeit 4. Aufl., 1990.
- Smit, A-National Arbitration, 63 Tulane Law Review, 629, 1989.
- Sutton/Kendall/Gill, Russel on Arbitration (21th ed.), 1997.

<Zusammenfassung>

Overview on Indian Arbitration Law

Chung, Yong-Sang

Indien hat 1 Mrd. Bevölkerungen und nimmt man daher positiv an, dass Indien in der Zukunft zu einem anderen China werden dürfte. Kürzlich immer mehr steigert die Volumen des Handelsverkehrs zwischen Indien und Korea. Zur Zeit sind viele koreanischen Unternehmen in Indien tätig und legen ihr Kapital dauerhaft an. Diesbezüglich kann die Möglichkeit des Handelskonflikts zwischen Indien und Korea jederzeit bestehen. Um dieser Konfliktmöglichkeit angemessen zu begegnen, muss eine grundlegende Untersuchung des indischen Arbitrationsrechts dringend erforderlich sein. Entsteht der Konflikt in internationaler Handelsverkehr, denkt man an internationaler Klage oder dem Einreichen einer Klage an WTO. Jedoch gibt diese Möglichkeiten nicht zu vorsehenden Schwierigkeiten. Daher empfiehlt sich vor allem Lösungsmethode durch das Rechtsinstitut "Arbitration". Dazu notwendig ist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zwischen indischem und koreanischem Arbitrationsrecht. In dieser Untersuchung wird die Struktur des indischen Arbitrationsrechts skizziert. Das indische Arbitrationsrecht stammt genau so wie das koreanische Arbitration aus dem Rechtmodell von UNO, das das Hochniveau haben dürfte. Dementsprechend gibt es keine große Unterschiede zwischen beiden Ländern.

Diese Untersuchung als Voruntersuchung zur zu zukünftig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enthält folgende Themen: Gesetzgebungshintergrund und -sinn, Charakter des Arbitrationsrecht, Gesetzgebungssystem, Arbitrationsvertrag, Konstruktion des Arbitrationssenats, Arbitrationsverfahren und Arbitrationsentscheidung in indischem Arbitrationsrecht.

Diese Untersuchung dient schließlich als Ansatz der weiteren Untersuchung des indischen Arbitrationsrechts.